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9 발의연월일: 2020. 9. 10.

발 의 자:유동수・박 정・송옥주

정춘숙・이상직・허종식

김종민 · 김교흥 · 홍영표

윤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승인뿐만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금융투자업의 인가 체계는 인가업무 단위를 세분화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외국 금융투자업자들 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 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 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부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치기관이 직접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현행법은 금융기관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 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나 단기금융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인가요건으 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로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안 제16조의 3).
- 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74조).
- 라.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안 제360조제2항 제6호).
- 마. 제16조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5조제1호).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인가요건의"를 "인가요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편제1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 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 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항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치금융투자업자는"을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를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대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투자자예탁 금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 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 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 2호"를 "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가조건"을 "인가조건 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항"으로, "인가요건"을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추가등록요건"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인가"를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한다.

제445조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별표 1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3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간의 영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 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생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
			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
			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
			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
			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
			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
			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
			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

- 응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 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제2항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 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한다.
- ①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 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 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 다)
-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 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 ④ (생 략)

⑤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다음 ⑤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u>자가</u>-----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 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 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에게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로서 영업 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 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 으로 본다.

- ① ~ ④ (현행과 같음)

------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 사실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 7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 기·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 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7. (생략) <신 설>

<신 설>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후단 삭제〉 다만, 제6호 및 제 원회의 투자자예탁금 지급결정 이 있어야 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 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 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 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

<신 설>

<신 설>

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 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

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 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 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 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 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 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 ② (현행 제6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⑥ ~ ⑧ (생 략)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 무)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 5. (생 략) <신 설>
- ③ ~ ⑧ (생 략)
- ⑨ 단기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⑩ (생 략)
-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4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생략)
 -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		
<u>출 것</u>		
③ ~ ⑧ (현행과 같음)		
9		
નો/ ∻		
<u>제6호</u> 를 제외하며, 제2호		
<u> </u>		
· ⑩ (현행과 같음)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対) ①		
<u>제12</u>		
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		
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		
<u>등록</u>		
1. (현행과 같음)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		

무) ①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 8. (생략)

② • ③ (생 략)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가 또는 제18조·제117조의 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6.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u>가등록조건</u>				
3. <u>제15조제1항</u>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				
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u>금융투자업</u>				
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u>단위 추가등록</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5조(벌칙)				
<u>.</u>				
1.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
	업을 영위한 자
<u><신 설></u>	<u>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u>
	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
	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u>1.</u> (생 략)	<u>1의3.</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8. (생 략)	2. ~ 48. (현행과 같음)